

# 뉴욕 시는 간병인들을 보호합니다

## 권한과 자원 개요

**뉴욕 시에서 전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면 직장 내 질문 및 불만 사항이 있을 때 뉴욕 시 전담 부서인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노동정책과 기준 사무소(Office of Labor Policy & Standards) 산하 유급 간병 사업부(Paid Care Division)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병인에는 가정 간호 도우미, 개인 간병 도우미, 가정 도우미, 보모, 간병인 및 가정 청소부와 같은 가정 간호 및 가사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DCA는 귀하가 중요한 권리와 자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이 안내문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번에 전화하여 “Paid Care”를 요청하거나 [nyc.gov/dca](http://nyc.gov/dca)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 권리

### 미국 내 신분에 상관없이 권리가 있습니다.



#### 최저 임금

개인 가구 또는 개인을 위해 전적으로 일하거나 직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0.50입니다.

가정 보호 기관을 포함해 고용주가 1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1.00입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임금 관련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뉴욕 주 노동부 웹 사이트 [labor.ny.gov](http://labor.ny.gov)를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1-888-4-NYSJOB (1-888-469-736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에게 가정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그렇다면, 뉴욕 주의 임금 패리티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번에 전화하여 “Paid Care”를 요청하십시오.



####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근무 시간 전후 및 근무일 동안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번에 전화하여 “Paid Care”를 요청하거나 [nyc.gov/dca](http://nyc.gov/dca)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 초과 근무 수당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정규 급여율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집에 같이 살면서 근무하는 가사 노동자인 경우, 일주일에 44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 시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 병가

뉴욕 시에서 일 년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매년 자신과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40시간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가사 근로자인 경우, 가정 고용주는 뉴욕 주 노동법에

의거한 3일간의 유급 휴가 이외에 2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nyc.gov/PaidSickLeave](http://nyc.gov/PaidSickLeave)를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311번에 전화하십시오.



#### 차별 없는 직장

뉴욕 시 인권법은 4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권법은 출신 국가, 인종, 종교/신조, 성별, 성 정체성을 포함한 몇 가지 보호 계층을 다루며, 취업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뉴욕 시 인권 위원회 전화 상담 서비스 1-718-722-313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뉴욕 주 인권법은 고용주의 규모에 상관없이 인종, 종교 또는 국적에 근거한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부터 가사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인권 부서 1-888-392-3644에 문의하십시오.



#### 구직자 보호

DCA는 수수료 및 환불, 계약 및 영수증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고용 기관에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고용 기관에 관한 불만을 신고하려면 [nyc.gov/dca](http://nyc.gov/dca)에서 구직자의 인권 선언을 하거나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직장에는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직업상 위험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OSHA.gov](http://OSHA.gov)를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1-800-321-OSHA (1-800-321-674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근무 중에 상해를 당하면, 임금 및 의료 치료의 일부분을 총당하도록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cb.ny.gov](http://wcb.ny.gov)를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1-877-632-49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자원

## 이민 지원

ActionNYC는 신청인의 모국어로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안전한 무료 이민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nyc.gov/actionnyc](http://nyc.gov/actionnyc)를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ActionNYC”라고 말하십시오.

## 영어 수업

뉴욕 시 청소년 및 지역 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뉴욕 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시민들이 영어를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dycd](http://nyc.gov/dycd)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 저가 건강 보험

뉴욕 시 인적 자원 관리국(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은 필요와 예산에 맞는 건강 보험 및 진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11번에 전화한 후 [nyc.gov/health](http://nyc.gov/health)를 방문하여 보건부 공인 접수 카운슬러를 찾아서 무료로 직접 면담 도움을 받거나, 뉴욕 주 보건 웹 사이트 [nystateofhealth.ny.gov](http://nystateofhealth.ny.gov)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 복지 혜택

ACCESS NYC는 30개 이상의 시, 주 및 연방 혜택 프로그램 수혜 혜택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ACCESS NYC를 통해 특정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CESS NYC 정보는 [nyc.gov/accessnyc](http://nyc.gov/accessnyc)를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무료 재무 상담

뉴욕 시 재무 강화 센터(Financial Empowerment Centers)는 일대일 전문 재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되며 전문 상담원은 여러 언어를 구사합니다. 예약을 하시려면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dca](http://nyc.gov/dca)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 무료 세금 준비

국세청(IRS) 인증 VITA/TCE 자원봉사 작성자와 함께 온라인 접수 및 직접 접수를 포함하는 뉴욕 시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taxprep](http://nyc.gov/taxprep)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뉴욕 시는 구직자에게 무료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nyc.gov/workforce1](http://nyc.gov/workforce1)을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Workforce1 커리어 센터를 찾으십시오.

# 유급 간병 사업부(Paid Care Division)

유급 간병 사업부(Paid Care Division)는 유급 간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급 간병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전문 간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는 다음과 같이 전문 간병인을 지원합니다.

- 전문 간병인의 권리와 뉴욕 시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한 **공공 지원 활동 및 교육**.
- 지역,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직장 내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집행 및 불만 신고 및 소개**.
- 근로자 인구 통계, 근로 조건 및 산업 표준, 사업주의 직장 법 준수, 및 근로자 협동 조합의 효과에 대한 **연구 와 정책 개발**.



Consumer  
Affairs

Lorelei Salas  
Commissioner

뉴욕 시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은 뉴욕 시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DCA 노동 정책과 기준 사무소(Office of Labor Policy & Standards)는 근로자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여 재무 건전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